탄 원 서

피고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 2026고합587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3부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

1. 혐의를 사건별로 구분해 주실 것을 요청

공개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는 2024년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관련 혐의와 2025년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포기에 관한 별도의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제기됐습니다. [1] [3] [4] 두 혐의는 행위 시기와 상대방, 행사됐다는 권한, 법률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한 사건에서 확인된 정황을 다른 사건의 고의나 실행행위로 자동 전가하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검사 파견 관련 통화와 지시의 내용

특검의 주장과 재판에서 언급된 진술에 관한 보도에는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 사이의 통화, 검사 파견 문제 등이 등장합니다. [1] [2] [11] 그러나 통화 사실, 파견 가능성 검토, 실제 후보명단 작성, 후속 발령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통화 원문이나 정확한 진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특정한 위법 조치를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구체적 지시와 조정이 확인되면 단순한 의견 교환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에서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3. 후보 명단과 문서 생성 경위

검사 후보 문건이나 관할 검토 자료가 존재했다는 주장은 문서 원본 및 생성·수정·전송 기록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1] [4] 누가 최초 작성했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지시가 전달됐는지, 법무부의 요청과 검찰 내부의 독자적 판단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박성재 전 장관 사건의 항소심 판단이 심우정 개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자동으로 증명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변호인과 특검의 주장을 원문 증거 및 문서 메타데이터에 비춰 검토해 주십시오.

4. 즉시항고 관련 법적 권한과 행위의 상대방

2025년 즉시항고 포기 관련 혐의는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문제와 별도로 판단돼야 합니다. [1] [4] 우선 당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법률상 허용 여부와 적용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불복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검찰총장의 실제 지휘·결재가 무엇이었는지, 해당 지시로 누구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형법 제123조의 구성요건은 내부 의견 차이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8] 담당자 의견서와 결재기록의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5. 증거 기준과 영장 기각의 의미

2026년 7월 구속영장 기각은 본안의 유죄·무죄 판단과 같지 않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법정에서 증명되는 사실과 공소기관·피고인 측의 설명은 구별돼야 합니다. [9] 내란중요임무종사 관련 혐의는 형법 제87조의 요건을, 직권남용은 제123조의 상대방·권한·행위 요건을 각각 심리해야 합니다. [7] [8]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제 지시·실행·결과와 인식 정도를 형법 제51조의 양형에 고려해 주십시오. [10]

6. 결어

저는 확인되지 않은 변명이나 인품·반성을 만들어 주장하지 않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 지시, 문서 원본, 법적 권한과 상대방의 의무를 분리해 판단해 주시기를 탄원드립니다. 다른 사건의 일부 판단이나 보도를 확정된 사실처럼 사용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명된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

심우정 | 참고자료 및 제출 전 확인

1. 실제 본문에 인용한 공개자료

[1] 연합뉴스, 심우정 기소·특검 주장(2026.8.20)

[2] 연합뉴스, 박성재 2심 증인신문·심우정 진술(2026.9.15)

[3] 연합뉴스, 심우정 첫 공판준비기일(2026.9.30)

[4] 연합뉴스, 10.23 공판준비기일·판결문 확보 요청

[5] 연합뉴스, 박성재 항소심 선고(2026.10.21)

[6] 연합뉴스, 심우정 구속영장 기각(2026.7.16)

[7] 형법 제87조(내란)

[8]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9]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10]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11] 뉴스핌, 2026.9.15, 박성재 항소심에서의 세 차례 통화 증언

2. 사건기록과 직접 대조할 항목

- 파견 관련 통화 원문·후보 문건 메타데이터
- 2025년 즉시항고 허용성 및 결재 권한
- 직권남용 상대방·의무 없는 행위 또는 권리